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3. 3. 28. 공포)되어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이 추가됨에 따라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반영
- 나. 예방접종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3. 5. 19. 공포)됨에 따라 비용지원 절차 및 신청서 서식 신설
-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3. 6. 13. 공포)되어 필수예방접종 주체 등에 특별자치시장 포함된 사항 반영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별표3,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1호의3서식, 별지 제21호의4서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나”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5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

다.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7(예방접종 유급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영 제23조의6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1호의3서식 및 제21호의4서식과 같다.

제36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나목2)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표 3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장중첩증	21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없음

별표 3의 법 제24조제1항 제17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
중 “법 제24조제1항제17호”를 “법 제24조제1항제18호”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 및 별지 제2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제7조제2항 관련)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는 다음 표의 분류에 따라 이상반응이 발생한 자를 말한다.

예방접종 종류	이상반응의 범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Tdap) 디프테리아, 파상풍 (Td)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DTaP-IPV/Hib)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7일 이내
	3. 위팔신경총 말초신경병증	28일 이내
	4.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폴리오 (IPV)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21일 이내
	3.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7-30일
	4. 만성 관절염	42일 이내
	5.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6.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결핵 (BCG)	1. 림프절 부기(지름 1.5cm 이상)	1년 이내
	2. 골염, 골수염	6개월 이내
	3. 전신 파종성 비씨지 감염증	6개월 이내
	4. 국소 이상반응	6개월 이내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B형간염 (HepB)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수두 (VAR)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7일 이내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일본뇌염 (IJEV, LJEV)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7일 이내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폐렴구균 (PCV, PPSV)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인플루엔자 (Flu)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위팔신경총 말초신경병증	28일 이내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5. 제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A형간염 (HepA)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없음
사람유두종 바이러스감염증 (HPV)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없음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장중첩증	21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없음
법 제24조제1항제18 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 정한 감염병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이상반응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시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신예방접종을 하는 감염병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이상반응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시간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예방접종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실제 생년월일		
	① 자녀구분		② 전화번호		
	③ 보호자 성명		④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				
예방접종 내용	접종명	☐ DTaP ☐ Tdap ☐ Td ☐ DTaP-IPV ☐ DTaP-IPV/Hib ☐ 폴리오 ☐ MMR ☐ BCG(피내) ☐ B형간염 ☐ 수두 ☐ 일본뇌염(사백신) ☐ 일본뇌염(생백신) ☐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 인플루엔자 ☐ A형간염 ☐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 그룹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법 제24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 ☐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시예방접종을 하는 감염병()			
	접종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접종일		백신 제조번호		
	백신명		제조사		
	⑤ 접종방법		⑥ 접종부위/ 용량		
	예진의사명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접종자명	(서명 또는 날인)			
	⑦ 의학적 소견				
	⑧ 필수 예방접종 사 전알림동의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기록 (기관정보)	요양기관번호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보고기관명		보고기관장			

작성방법

- 출생신고 이전의 신생아 또는 쌍둥이의 경우 보호자의 몇 번째 자녀인지 적습니다.
- 유선 또는 보호자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③, ④ 출생신고 이전 신생아의 경우 적습니다.
- 근육주사, 피내주사, 피하주사, 경구 접종 등 접종방법을 적습니다.
- 삼각근, 위팔 외측면, 넓적다리 전외측 등 접종부위를 적습니다.
- 중복접종, 이른 접종 등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따르지 않은 접종이 필요한 의학적 소견을 적습니다.
-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가 다음 예방접종일의 사전알림을 희망하는 경우 전화번호란에 부모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①, ③, ④, ⑧은 만 12세 이하 예방접종 대상자의 경우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

예방접종 유급휴가 비용지원 신청서(근로자용)

※ 색상이 어두운 칸에는 신청인이 적지 않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업주 (신청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접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접종 세부사항	예방접종일				
	대상 감염병명				
	예방접종 실시기관	접종기관명		전화번호	
		접종기관 주소			
	유급휴가 비용지원 금액				
유급휴가 비용지원 금액 산출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근로자가 접종한 사실 및 접종한 다음날이 근무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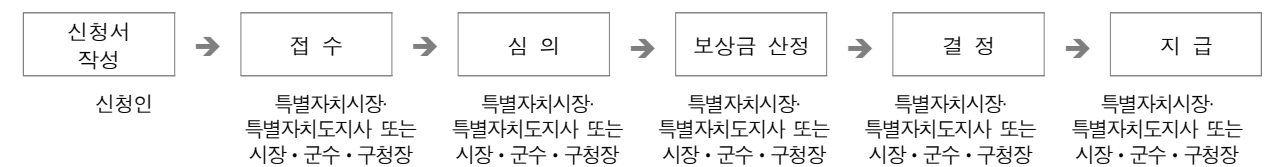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예방접종 유급휴가 비용지원 신청서(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용)

※ 색상이 어두운 칸에는 신청인이 적지 않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접종자)	주소			전화번호	
예방접종일					
대상 감염병명					
접종 세부사항	예방접종 실시기관	접종기관명		전화번호	
		접종기관 주소			
	유급휴가 비용지원 금액				
	유급휴가 비용지원 금액 산출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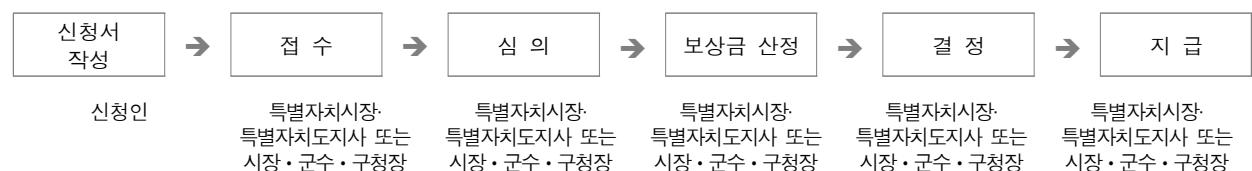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접종한 사실 및 접종한 다음날이 근무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려는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별지 제1호의 3서식의 감염병 발생 신고서, 별지 제1호의 4서식의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별지 제1호의 5서식의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u>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u>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u>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u> 해당 신고서 또는 발생보고서를 질병관리청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각 제출해야 한다.	제10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 ----- ----- ----- ----- ----- ----- ----- ----- ----- -----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u> ----- ----- ----- ----- ----- -----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u> ----- ----- ----- -----.
1. ~ 4.(생략)	1. ~ 4.(현행과 같음)

제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21조의2(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 알림에 동의한 사람에만 해당한다.

② (생략)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① 법 제28조제1

제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①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① -----

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②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나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요청)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영유아의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제25조(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요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

제29조(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①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비지정 감염병관리 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

제31조의7(예방접종 유급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영 제23조의6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1호의3서식 및 제21호의4서식과 같다.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①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

② ~ ④ (생략)

제37조(소독업의 신고) ① (생략)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서에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법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독업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소독업 신고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소독업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

제38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

② -----

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신고사항을 소
독업 신고증 뒷면에 적어 이를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53조에 따라 휴업·폐
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소독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독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다만, 폐업을 신고하
려는 소독업자가 소독업 신고증
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27
호서식의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으면 소독업 신고증을 첨부하
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
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송
부한 제1항의 신고서를 관할 특
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접수한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것
으로 본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

-----.

제39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①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 -----
-----.

-----.

② -----

----- 특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사항을 소독업 신고증 뒷면에 적어 이를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44조(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예방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47조(보상의 신청 등) ①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③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

제44조(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①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보상의 신청 등) ①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서식의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1. 2. (현행과 같음)

② -----

-----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

-----.

1. -----

의 경우 가. (생 략) 나. 부검소견서.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생 략) 2)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u>특별자치도지사</u>,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다. (생 략) 2.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1) (현행과 같음) 2) ----- ----- ----- -----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u>----- ----- -----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